

공판기일연기신청

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, 변호인은 증인소환 절차 준비 미비로 당일 재판준비가 불가능하오니 위 공판기일을 1주일 정도 미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○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 형사항소 제○부 귀중
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270조	www.klo
신 청 인	・재판장(직권) ・검사 ・피고인이나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	·이의(형사소송법 304조, 항고불허 : 형사소송법 403조) ·기간에 대한 명시규정 없음			